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인증과정 시행지침

2011년 9월 1일 제정
2012년 4월 1일 개정
2012년 7월 1일 개정
2013년 9월 1일 개정
2014년 3월 1일 개정
2014년 9월 1일 개정
2014년 10월 15일 개정
2014년 12월 19일 개정
2017년 3월 1일 일부개정
2017년 3월 1일 일부개정
2018년 9월 1일 일부개정
2019년 3월 1일 일부개정
2019년 11월 1일 일부개정
2020년 5월 1일 일부개정
2022년 3월 1일 일부개정
2023년 6월 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의 전문과정 이수 및 전문과정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성화전문과정) 대학원은 국제법무(Global Legal Practice)전문과정을 특성화과정으로 운영하며, 세부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비즈니스전문과정
2. 국제통상법무전문과정

제3조(전문과정) ① 대학원은 공익·인권전문과정, 분쟁해결(DR)전문과정을 두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전문과정을 둔다.

1. 경제법
2. 고용·복지법
3. 금융법
4. 기업법무
5. 기초법학
6. 도산법
7. 유통법
8. 조세법
9. 지적재산권법
10. 해상법
11. 행정법
12. 형사사법
13. 국제공법

② 대학원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전문과정을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4조(교과과정 및 이수요건) ① 각 전문과정의 교과과정 및 이수요건은 [별표1] ‘전문과정일람’에 의한다.
<개정 2022.03.01.>

② 대학원 학생은 이 지침에서 정한 전문과정 가운데 2개의 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5조(신청 절차) ① 전문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2학년 1학기 소정의 신청기간 안에 지정된 방법으로 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01.>

② 학생은 졸업학기 소정의 신청기간에 한하여 추가 신청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03.0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수신청 기간 후에 전문인증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기간 후 신청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3.01.>

제6조(인증서 수여) 대학원은 전문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졸업학기 최종성적이 확정된 후 이수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해당과정의 전문과정인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2.03.01.>

② <삭제 2022.03.01.>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09학년도에는 졸업학기에 전문인증신청을 받아서 인증서를 수여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국제법무역량(ILSP)과정의 삭제].

2.(경과조치) 2012년 1학기에 국제법무역량 전문과정을 신청한 학생은 동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선택과목 추가. 형법연습(3), 형사소송법연습(3)]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지침명, 별지(조세법 전문과정, 형사사법 전문과정 과목 변경, 행정법 전문과정 토지공법 추가)개정, 제1조, 별지(도산법 전문과정) 자구수정]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지침명, 별지(조세법 전문과정, 형사사법 전문과정 과목 변경, 행정법 전문과정 토지공법 추가)개정, 제1조, 별지(도산법 전문과정) 자구수정]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지침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지1] “11. 행정법 전문과정”은 시행일 이전에 경찰실무 교과목을 기이수한 학생에게도 적용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 [별지1] 전문과정일람 전면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지침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해상법 전문과정 개정)
2. (경과조치) 신규 추가된 교과목을 기이수한 경우에도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지침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조세법 전문과정 개정)
2. (경과조치) 신규 추가된 교과목을 기이수한 경우에도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

부 칙

이 시행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2,3항, 제6조, [별표1] 개정)

부 칙

이 시행지침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전문과정일람

- ① 과정별 이수 학점 충족
- ② <해당 교과목> 평균 평점 3.0 이상
- ③ 기타 과정별로 요구하는 세부 인증 요건

1. 국제비지니스법무 전문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3학점)			국제거래법			
선택 (12학점 이상)	한국계약법 I	한국계약법Ⅱ 미국법입문	미국회사법	미국계약법 국제사법	국제상사중재법 국제계약법 <u>중국기업법</u>	<u>법과세계화 I-III</u> <u>국제지적재산권법</u> <u>비교경제법</u> <u>국제금융법</u> 국제해상운송법 중국법입문
실무 (2학점 이상)	법률정보조사				M&A이론과실무 영어모의법정 및 영어법무실습 I	국제영문계약실무 영어모의법정 및 영어법무실습Ⅱ 상사계약실무 국제중재실무

세부 인증 요건

- 총 20학점 이상 이수(외국어강좌 5학점 이상 이수)
- 재학 중 1개 이상 외국어 시험성적 제출(토익 815점 이상, 토플 94점 이상, 텡스 316점 이상, IELTS 6등급 이상)

※ 다른 주요 외국어도 인정 가능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영어기준에 준하여 정하며, 입학 시 제출한 성적도 인정함

2. 국제통상법무 전문과정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3학점)				국제통상법		
선택 (12학점 이상)	한국계약법 I	한국계약법II 미국법입문	국제법	국제통상관련 지적재산권법 자유무역협정론 협상이론과기법	반덤핑법 국제통상분쟁해결제도 국제투자법 국제무역과환경 유럽연합법	법과세계화 I III 서비스무역법
실무 (2학점 이상)	법률정보조사				영어모의법정 및 영어법무실습 I	영어모의법정 및 영어법무실습II
세부 인증 요건 1. 총 20학점 이상 이수(외국어강좌 5학점 이상 이수) 2. 재학 중 1개 이상 외국어 시험성적 제출(토익 815점 이상, 토플 94점 이상, 텡스 316점 이상, IELTS 6등급 이상) ※ 다른 주요 외국어도 인정 가능하고 구체적 기준은 영어기준에 준하여 정하며, 입학 시 제출한 성적도 인정함						

□ 공익·인권 전문과정, 분쟁해결(DR) 전문과정

1. 공익·인권 전문과정

○ 설계취지

법률가의 공익적 사명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책임을 확인하고, 공익 및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전문적 접근방법과 해결대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선택 (10학점 이상)			공익인권법 <u>사회취약계층과법</u>		차별금지법 사회보장법	국제인권법
	공익법률상담 I - II					
실무 (2학점 이상)	실습과정 I - IV 임상법무실습 I -IV					
세부 인증 요건 실습과정은 2학점을 반드시 공익활동 및 인권관련 기관(국가인권위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수행하여야 함						

2. 분쟁해결(DR) 전문과정

○ 설계취지

협상, 조정, 중재 등 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다양한 분쟁해결절차를 탐구하고 습득하도록 하여 사회갈등을 능동적·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봉사적 자세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함임.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 (9학점)			민사소송법(하)	협상이론과기법		분쟁해결론
선택 (3학점 이상)					국제상사중재법 국제통상분쟁해결제도 조정실무	국제중재실무

□ 전문과정

1. 경제법 전문과정

○ 설계취지

경제법 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내용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경제학, 부정경쟁방지법 및 프랜차이즈법 등을 선택과목에 추가하여, 시장원리의 작동과 기업행위에 대한 규제 등을 이해하도록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법률가로서 관련 법 원칙과 법적 분쟁 해결 등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함.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6학점)			공정거래법	소비자법		
선택			법경제학	상표법및부정경쟁방지법 유통법	경제법연습	
실무	임상법무실습 I-IV					
세부 인증요건						
① 선택교과와 실무교과 6학점 이상 이수						
② 임상법무실습은 금융경제법클리닉에 한하여 인정						
③ 2018학년 이전 입학생의 의무교과는 1과목(공정거래법)이며, ‘소비자법’은 선택교과로 인정한다.						

2. 고용·복지와 법 전문과정

○ 설계취지

현대사회의 기본성격의 하나는 고용사회라는 점이다. 현대인은 학교교육을 마친 후 고용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노후를 대비한다. 이와 같이 고용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타당한 해결방법을 탐구함으로써 이 분야의 전문법조인을 양성하는데 기여한다.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 (6학점)		노동법			사회보장법	
선택 (6학점 이상)			HRM과노동법	행정쟁송법 노동소송실무	차별금지법	노동법연습

3. 금융법 전문과정

○ 설계취지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법 등 다양한 금융 관련 법률과 금융거래약관을 둘러싼 실무사례를 탐구하고 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 21세기 금융자본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금융법에 특화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취지로 설계한 것임.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선택 (12학점 이상)		금융법	자본시장법	보험법 금융거래법실무	신탁법	은행법

4. 기업법무 전문과정

○ 설계취지

오늘날 고도로 산업화된 시대에서 사회 및 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은 회사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식회사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활동 범위와 영역이 글로벌화에 맞추어 점차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관한 법률적인 수요 역시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법학전문대학원이 우리 사회 및 경제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감안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 해당 기업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면에서 지원해 주고, 또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이미 발생한 분쟁을 유효,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인 사업 리스크를 경감시킴으로써 앞으로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professional)로서의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함.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3학점)			회사법			
선택 (9학점 이상)			자본시장법	어음·수표법	M&A이론과실무	회사소송의이론과실무 상사계약실무

5. 기초법학 전문과정

○ 설계취지

법질서의 근거와 작동원리를 법체계와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체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법적 사고와 논증방식의 기초를 학습함으로써 법실무 능력의 함양과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 (3학점)		법철학				
선택 (6학점 이상)	법사상사		법경제학			<u>법적논증이론</u>

6. 도산법 전문과정

○ 설계취지

도산사건이 폭증하여 도산법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은 심도 있는 도산법 교육을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인바, 학생들에게 도산법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어느 정도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 (12학점)			민사소송법(하) 회사법		회생파산법	민사집행법

7. 유통법(DL) 전문과정

○ 설계취지

Wal-Mart 등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전세계 유통시장의 bargaining power가 생산업체에서 구매업체(대규모소매업체)로 이동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사이버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Buyer Power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정부는 대규모유통업체의 우월적 구매력의 남용을 규제하는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는 상황임. 유통분야에 아직 전문법조인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 유통기업의 법률수요에 대처할 전문법조인을 선도적으로 양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3학점)			상법총칙·상행위법 공정거래법			
선택 (6학점 이상)			국제거래법	매매법 유통법 소비자법		상사계약실무

8. 조세법 전문과정

○ 설계취지

조세법률주의,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소멸의 과정을 중심으로 조세법률관계의 기본적 내용을 탐구하고 습득하도록 하여 전문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도록 양성하기 위함임.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 (6학점)			세법 I	세법 II		
선택 (3학점 이상)		민법 IV	행정법 I 회사법 상법총칙·상행위법	행정쟁송법		

※ 2018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유예조치

구분	유예 조치
이수요건 변경	기존 <의무 9학점, 선택 3학점>에서 <의무 6학점, 선택 6학점>으로 변경
의무 교과목 인정	· 세법(세법 I) · 행정법 I, 회사법, 세법II 중 한 과목 (추가 이수한 교과목은 선택 교과목으로 인정)
선택 교과목 인정	1. 폐지된 교과목(소비세법및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및법인세법, 조세법연습) 2. 신규 포함된 교과목(민법IV, 상법총칙·상행위법, 행정쟁송법)

9. 지적재산권법 전문과정

○ 설계취지

장래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자 함.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선택 (12학점 이상)			지적재산권법개론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및부정경쟁방지법 국제통상관련지적재산권법 엔터테인먼트법 인터넷법	IT법	

10. 해상법(maritime law) 전문과정

○ 설계취지

우리나라의 해운조선 무역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수요를 다루는 해상법과 관련과목을 이해하고 실무를 익히도록 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해상변호사를 양성하고자 함.

○ 교과과정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의무(6학점)					해상법	국제해상운송법
선택 (6학점 이상)			상법총칙·상행위법 국제거래법	보험법 국제사법	해상보험법	선박충돌법 민사집행법
<세부 인증 요건>						
해상법관련 국내 혹은 해외연수기관에서 2주 이상 연수						

11. 행정법 전문과정

○ 설계취지

장래 행정실무, 행정소송, 등 행정법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자 함.

○ 교과과정

